

대외비

로지스포인트 평택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서

2022년 6월 17일

구매자 : 마스턴평택제78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공급자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최종사용자 : 주식회사 컬리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서

1. 계약명: 로지스포인트 평택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이하 “본 계약”)
2. 사업기간: 2022년 6월 17일 ~ 2023년 6월 30일
 - 1) 2023년 1월 31일까지 H/W 설치 완료
 - 2) 2023년 2월 28일까지 단동테스트, 연동테스트 및 설비 Capacity 테스트
 - 3) 2023년 3월 31일까지 종합시운전 및 통합운영 테스트
 - 4) 2023년 6월 30일까지 최종 인수 (준공)

※우천일수와 공휴일, 동절기, 주 52시간제 등이 포함된 총 공사기간 (Calendar Day)임
3. 계약금액: 일금 팔백사십삼억이천육백만원(₩84,326,000,000) – VAT 포함
 - 공급가액: 일금 칠백육십육억육천만원(₩76,660,000,000)
 - 부가가치세: 일금 칠십육억육천육백만원(₩7,666,000,000)
4. 선금금 이행보증: 선금금 금액의 100%(₩7,139,000,000)(VAT 포함)
5. 계약 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8,432,600,000)(VAT 포함)
6. 대금지급일정: 아래 표와 같음

| 내역 | 청구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 지급조건 |
|--------|--------------------------|---|
| 선금금 | ₩7,139,000,000 | 선금금이행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각각 제출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 현금지급) |
| 중도금 1차 | ₩28,556,000,000 | 메자닌, PUT WALL, 소터, 컨베이어, MSC 등 주요자재 입고 완료 |
| 중도금 2차 | ₩32,065,000,000 | H/W 설치 및 본건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
| 중도금 3차 | ₩6,626,400,000 | 단동테스트, 연동테스트, 종합시운전 완료 |
| 잔금 | ₩9,939,600,000 | 판권리스트 조치 완료, 물류 운영 솔루션(물동량 등) 점검 완료, 최종점수 및 인수 완료, 하자보수이행보증서 제출 |

7. 하자보수 책임기간
 - 설비: 최종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4개월
 - SW: 최종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4개월
8. 하자보수 이행보증: 계약금액의 10%(₩8,432,600,000) (VAT 포함)
9. 지체상금율: 연동테스트 및 종합시운전 완료일 기준, 1일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3/1000,
계약금액의 10% 한도
10.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없음
11. 계약문서
 -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서
 - 별첨 1: 1.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일반조건,
 - 별첨 2: 2.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특수조건.
 - 부록: 1. 견적서 및 최종 내역서, 2. 시방서(설비배치도, 사양서 등 포함), 3.
사업수행계획서(공정표 등 포함), 4. 설계도, 5. RFP, 6. RFP에 기초한 제안서

상기 계약에 대하여 마스턴평택제78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를 구매자, 주식회사 에스에프
에이를 공급자, 주식회사 컬리를 최종사용자로 하여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 후 구매자, 공급자, 최종사용자가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2022년 6월 17일

대외비

구매자

마스턴평택제78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20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법인이사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인)

공급자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영천동)

대표이사 김 영 민 (인)



최종사용자

주식회사 컬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18층(역삼동)

대표이사 김 슬 아 (인)



별첨 1.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구매자와 공급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를 의미한다.
2. “공사” 또는 “설비공사”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물류자동화설비 및 제어시스템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제반 공사를 의미한다.
3. “구매자”는 마스턴평택제78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를 의미한다.
4. “본건 건축물”이란 설비가 설치되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령리 1136 및 1137 소재 로지스포인트 평택 물류센터를 말한다.
5. “시공사”는 구매자와 사이에 본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의미한다.
6. “임차인”은 구매자와 사이에 본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의미한다.
7. “준공”은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고 제26조에 따라 준공승인을 받은 후 구매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구매자가 목적물의 인수를 완료한 것을 의미한다.
8. “현장감독원”은 구매자가 선임하는 현장감독관(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자 및 감리 용역 수행자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기술직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을 의미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급자가 선임하는 자로서 현장 및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본 계약에 따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직무를 감독하는 담당자, 기술직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란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개점하고 있는 날을 의미한다. 명확히 하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또는 일부 은행 또는 어느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11. “최종사용자”는 주식회사 컬리를 의미한다.

제3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서,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 및 다음 각 호의 문서들(이하 “부록”, 이하 계약문서를 총칭하여 “본 계약(서)”)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견적서, 최종 내역서 (2022년 05월 31일 제출본) – “부록 1”
2. 시방서 (설비배치도, 사양서 등 포함) – “부록 2”
3. 사업수행계획서(공정표 등 포함) – “부록 3”
4. 설계도 – “부록 4”
5. RFP – “부록 5”
6. RFP에 기초한 제안서 – “부록 6”

대외비

- ② 공급자는 본 계약 체결 시 구매자, 공급자 및 최종사용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부록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록은 구매자, 공급자 및 최종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문서의 수정, 보충 및 변경은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계약문서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선순위는 (1) 특수조건, (2)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서, (3) 일반조건, (4) 부록 순으로 한다.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구매자의 해석을 우선에 둔다.

제4조 작업범위

- ① 공급자가 제공하는 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부록 4”)에 명시된 자동화 물류기기(이하 “목적물”)의 설계, 제조, 공급, 설치 및 인도
 2. 운전 및 유지보수 매뉴얼의 작성 및 교부
 3. 목적물의 시공, 시스템 개발, 성능시험
 4. 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목적물의 운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6. 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자동화설비 구축 간 발생하는 대수선 공사 및 방화구획 면제에 관한 대관업무
 7. 구매자 또는 본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의 협조
 8. 상기 1호 내지 7호의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목적물 설치 공간의 소유자 및 임차인과 필요한 제반 사항의 협의
- ② 공급자가 제공하는 목적물을 포함한 주요 품목의 제조원, 사용 부품의 기준 및 작업의 상세내역은 부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5조 이행보증금 및 이행보증서

-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i)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선금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W7,139,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선금금 이행보증금”)의 이행보증서(이하 “선금금 이행보증서”)와 “계약금액”的 10%에 해당하는 금액(W8,432,600,000/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계약 이행보증금”)의 이행보증서(이하 “계약 이행보증서”), ii) 제7조 제4항에 따라 잔금 청구 시 “계약금액”的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의 이행보증서(이하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또한, 선금금 이행보증금, 계약 이행보증금,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을 총칭하여 “이행보증금”, 선금금 이행보증서, 계약 이행보증서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총칭하여 “이행보증서”)를 각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1.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② 선급금 이행보증서와 계약 이행보증서는 제26조에 따른 구매자의 최종인수증명서 발행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한다.
- ③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는 제26조에 따른 구매자의 최종인수증명서 발행일로부터 24개월간 유효하게 존속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의 이행보증서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수수료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⑤ 공급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이행보증서 개설 후 계약금액의 조정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이행보증금의 처리

- ①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각 이행보증금은 구매자에게 귀속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구매자의 손해가 이행보증서가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구매자는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이행보증서를 지체없이 공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지급

- ①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계약금액은 팔백사십삼억이천육백만원(₩84,326,000,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본 계약상 별도 규정 또는 당사자들 간의 별도 서면 합의로써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 계약금액은 확정금액이며, 목적물의 설계, 제작, 공급 및 설치 등 공급자의 본 계약상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공사에 수반되는 공통가설 항목, 관계 법규 준수를 위한 비용,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② 선급금

1.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45일 내에 칠십일억삼천구백만원(₩7,139,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제5조 제1항에 따른 선급금 이행보증서 및 계약 이행보증서의 제출이 이행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급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자재를 구매하는 데에 선급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도금: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한다.

1. 1차 중도금: 구매자는 공급자가 메자닌, PUT WALL, 컨베이어, 랙, DAS, 소터, MSC 관련 자재를 100% 입고(자재입고완료 확인서에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가 서명 날인 완료 시)한 이후로서 공급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익월 말일에 공급자에

대외비

계 이백팔십오억오천육백만원(₩28,556,000,000/부가가치세 포함)(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관련 자재의 입고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2차 중도금: 구매자는 공급자가 H/W의 설치를 완료(설치완료확인서에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가 서명 날인 완료 시)하고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로서 공급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익월 말일에 공급자에게 삼백이십억육천오백만원(₩32,06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3차 중도금: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25조에 따라 검수완료통지 및 단동테스트, 연동테스트, 종합시운전을 완료하여 예비준공증명서를 수령한 이후로서 공급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익월 말일에 공급자에게 육십육억이천육백사십만원(₩6,626,400,000/부가가치세 포함)(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④ 잔금: 구매자는 제26조에 따라 최종인수증명서를 발행한 이후로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달의 익월 말일에 공급자에게 구십구억삼천구백육십만원(₩9,939,600,000/부가가치세 포함)(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공사관리

① 착공 전



1. 공급자는 착공계획서, 예정 공정표, 시공계획서, 현장 직원의 임명 서류, 경력증명서 및 조직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2. 공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전 또는 공사 중에 공급자에 의해 바닥 또는 건물에 손상, 멸실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비용으로 즉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착공 시

1. 공급자는 공사 현장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또는 일반인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공사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공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구매자가 승인한 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 전반에 대해 공급자를 대표한다.
 3.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중장비(지게차, 렌탈장비, 크레인)에 대해 구매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한다.

대외비

- ④ 공사 현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은 구매자의 승인과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공급자는 일과 후 주변 구역을 정리하고 청소한다.
- 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자동화설비 구축 간 설치되는 메자닌 및 하중 관련 건물 구조계산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구조계산서의 오류 등에 기인하여 설계도 변경이 필요하게 되거나, 작업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작업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으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공급자가 책임진다.
- ⑥ 구매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공통 가설 항목 및 관련 법규 이행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공급 제반 비용(수도, 전기, 용수)을 부담한다.
- ⑦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구매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구매자가 직접 선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선 이행하도록 하고, 실 발생 비용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현장감독원

- ① 구매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현장감독원”)를 선임할 수 있다.
 -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리업무
 - 2. 계약이행에 있어서 공급자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 4. 목적물의 검수 및 ~~인도~~에 입회하는 일
 -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구매자가 위임하는 일
-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현장감독원은 본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자재 및 공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현장감독원의 감독에 협조한다. 단, 이와 같은 감독은 공급자의 본 계약 이행을 불합리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현장감독원은 본 계약 조건의 준수, 또는 회복 불가능한 급박한 손해나 구매자 또는 일반 대중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응급상황의 예방을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공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⑥ 본 계약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본건 건축물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 구매자(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현장감독원)는 공급자에게 본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원활한 공정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시공사가 본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해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업범위를 벗어나

대외비

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 ①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착공 전에 계약된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지정한다. 사업기간 중 구매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를 지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공급자의 사정으로 현장대리인 변경 시에는 구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를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당해 공사에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11조 공사현장 근로자

- ① 공급자는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공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매자가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③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구매자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배치 할 수 없다.



제12조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 ① 공급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공정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서
 2. 공정별 자재, 장비 및 인원투입 계획서
 3. 환경관리 계획서
 4.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경력증명서
 5. 기타 구매자가 지정한 사항
- ② 공급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매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구매자는 공급자가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대외비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⑤ 구매자는 필요시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진행 상황이 본 계약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구매자와 협의한 일정 내에 구매자의 요청에 응하고, 다음과 같이 구매자가 요청하는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1. 일간 공정회의: 주 5회(공사 및 설계 관련 진행 상황 내역, 전경 사진 및 주요 진행 상황 사진 제출)
 2. 월간 공정회의: 월 1회

제13조 사업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공사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하 “사업기간”)로 한다.

제14조 자재의 검사 등

-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부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부록에 품질, 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구매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용전에 구매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자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구매자의 확인 요청 시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구매자의 참여 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단, 사전에 구매자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 ⑦ 공급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 관리

- ① 공급자는 작업 중에 발생한 건설 잔재물 및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고,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민간 및 외부 기관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대외비

- ② 공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반드시 관련법규에 근거한 환경규제치 내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민간 및 외부 기관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직접 대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매자에게 유효한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단, 공급자는 공급자가 야기한 산업재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② 공급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공사 현장에서 공급자의 직원 및 고용근로자와 제3자에게 발생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산업 재해 예방을 보장한다.

1. 공급자는 공급자의 직원 또는 공급자의 하도급 근로자들에 대해 매일 공사 현장 투입 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안전 복장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한다.
3. 공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정하여 안전을 관리하게 한다.

- ③ 구매자는 현장에 현장 사무실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단, 추가적인 편의시설 및 별도의 가설 사무실, 창고는 관청 또는 토지소유주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현장 숙소 설치는 불가하다. 이상 언급된 현장 사무실 등 현장의 제반 시설 설치비용은 공급자의 비용으로 진행한다.

- ④ 구매자는 공급자가 시공한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상 요청을 받은 경우, 구매자는 즉시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해당 재해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로부터 구매자를 면책하고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⑤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가 민·형사·행정을 비롯한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지고 해결해야 하며, 민원해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⑥ 공급자는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구매자는 제6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응급조치

- ① 공급자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외비

- ② 구매자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응급조치를 요하도록 한 상황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비를 기준으로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8조 사업기간의 연장

- ① 공급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홍수, 폭발, 폭우, 자연재해, 범률 개정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사유(이하 “불가항력”)로 사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기간의 연장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④ 구매자는 제1항의 사업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자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부적합한 공사

-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자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구매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공급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공급자는 목적물에 대한 설계·시공이 산업안전 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점검기관의 자동화설비 정기안전검사 통과 기준 및 건축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안전·보건관계 법령 기타 제반 규제에 저촉되어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액을 부담한다. 이는 구매자가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고, 공급자에게 최종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20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공급자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의 변경, 중지

대외비

- ① 구매자가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설계도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공급자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단, 공급자의 귀책으로 공사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최종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 비목의 단가는 RFP에 명기된 설계변경 기준 및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되, 공급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최종 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② 공급자는 제22조 및 제23조 1항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물가변동,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위험 및 목적물의 소유권

- ① 목적물 관련 위험은 제26조 소정의 최종인수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 ② 목적물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계약금액을 완납하고,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는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구매자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공급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제25조 검수, 단동시험, 연동시험 및 종합시운전

- ① 공급자는 각 공정단계를 완공할 때마다 완공 내역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상호협의 된 일정 하에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의 검수를 받는다.
- ②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자는 공급자의 입회 하에 검수를 하여야 하고, 공급자로부터

대외비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검수결과를 통지한다. 단,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위 기간 내에 검수를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구매자가 요청하는 일자에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 ④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검수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된 일정 하에 구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는 목적물의 설치 완료(H/W, S/W 기타 장비 등 공급물품 일체 설치 완료)시 구매자에게 시험 일시를 통지하고 단동시험을 실시한다. 구매자는 공급자의 단동시험을 위하여 공급자 및 공급자가 지정하여 구매자가 승인한 자에게 현장접근을 허용하고 단동시험을 위한 부자재(재사용포장재나 출하종이박스, 파우치 등)의 유틸리티를 제공한다. 단, 단동시험에 필요한 인원과 화물은 공급자가 조달하며, 공급자는 화물 운반·포장·제함 등 단동시험에서 인력으로 행해지는 모든 업무는 공급자의 피용인 등 공급자의 인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⑥ 공급자는 단동시험이 완료되고 단동시험에 대한 검수완료통지를 수령한 경우,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 반출하는 등 처리하고,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 ⑦ 공급자는 단동시험에 대한 검수완료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이하 “성능시험기간”) 목적물의 성능이 RFP에 기초한 제안서에 기재된 성능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매자 및 구매자가 지정한 자의 입회 하에 물류 센터 전체 설비 및 시스템의 연동시험 및 실제 운영 조건에서 센터를 시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구매자는 성능시험기간 동안 목적물의 성능이 RFP에 기초한 제안서에 기재된 성능에 미달하는 점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목적물을 보수 또는 개조하여 성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⑨ 구매자는 성능시험기간 종료시 목적물의 성능이 RFP에 기초한 제안서에 기재된 성능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검수완료확인서(이하 “예비준공증명서”)를 제공한다. 단, 구매자는 그 선택에 따라 성능시험기간 종료일까지 목적물의 성능이 RFP에 기초한 제안서에 기재된 성능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로부터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한 금액을 배상받고 공급자에게 예비준공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 준공 및 인수

- ① 공급자는 예비준공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동안(이하 “안정화기간”) 구매자의 실물 물동량을 처리하고 목적물의 실제 성능을 확인한다. 안정화기간 동안 목적물의 성능이 RFP에 기초한 제안서에 기재된 성능에 미달하는 점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목적물을 보수 또는 개조하여 성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목적물의 성능 입증을 완료한 뒤 안정화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전에 구매자에게 준공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준공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아래 세부내역을 구매자에게 제공한다.

대외비

1. 설계도(완성된 설계도면 및 설계 명세서 및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내역에 대한 문서 사본 2부를 포함함)
 2. 장비 및 주요 부품의 제조국, 제조자 및 관련 연락처 등을 명시한 정보문서 및 하자보증서
 3. 하자보수이행계획, 정기점검계획, 유지보수 및 긴급대응 방안(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포함)
 4.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사용자 매뉴얼)
 5. 각종 설비 유지 관리에 대한 백업데이터 파일 (사전 협의한 PLC, 인버터, BCR 등)
- ③ 구매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안정화기간이 종료되고 공급자로부터 제2항에 열거된 자료를 모두 수령하는 경우 자체 없이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고 공급자에게 최종인수증명서를 발급한다. 구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열거된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최종인수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7조 손해배상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공급자가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무의 수행을 게을리하여 본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지연됨으로써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2. 공급자가 수행한 공사용역의 하자로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용역 수행을 포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인수 후 공급자의 귀책으로 하자보증기간 내에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5. 공급자가 수행한 공사용역의 하자로 구매자의 임·직원, 대리인, 수급인 등 제3자가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해 구매자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 ②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도 본 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에 공급자가 배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총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 단, 본 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구매자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전문의 손해배상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의 한도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제28조 지체상금

- ① 공급자는 예비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급자가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무의 수행을 게을리하여 본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지연될 때(명확히 하면, 공급자가 이행해야 할 소방설비 공사, 소방 연동제어 테스트 및 가동 기타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공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2023년 1월 31일 이후로

대외비

지연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총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검수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급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구매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 등 채권으로 공급자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① 공급자는 구매자가 최종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설비 및 소프트웨어 모두 각 24개월 동안(이하 “하자보수 의무기간”) 공급자의 작업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 수리 또는 교체의 책임이 있다.
- ② 구매자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 공급자에게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하자가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공급자는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검수 결과 하자가 공급자의 단독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자, 공급자 및 이와 관련되는 자의 협의에 따라 하자보증의 책임을 정한다.
- ③ 구매자가 검수 완료한 경우, 공급자는 제1항의 하자보증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5조 제1항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 ④ 구매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에 긴급히 하자보수 필요가 있을 경우, 공급자에 사전 통보하고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하자보수비 내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구매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정기 예방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서비스
 1. 공급자는 최종 검수일로부터 2년 동안 반기 별로 정기 예방 유지보수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급자는 최종 검수일 이후 세부 일정을 제출한다. 정기 예방 유지보수서비스의 세부 내역은 최종 인수 이전에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최종검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선택적 유상유지보수를 제안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기간 동안 구매자의 요청 후 1시간 이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복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 기술자 파견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1시간 이내에 대응해야 한다.
- ⑥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i)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ii) 해당 하자가 제5항 제3호에 따른 긴급복구서비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5항 제3호의 시간 내에 출동하여 하자를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로 인해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영업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액을 부담한다. 이때 구매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및 손해액

대외비

이 제3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하도급 등

- ① 공급자가 도급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하도급을 하더라도 계약상의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책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품질, 안전, 공정, 공사기간 및 기성관리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부담하며, 하수급인의 공사관련 귀책사유는 구매자의 관리감독의무의 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보며, 이는 구매자가 공급자의 하도급에 동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구매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구매자는 본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 ⑤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기 앞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하도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그 하도급한 부분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지며, 하도급으로 인해 공급자의 본 계약상의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1. 하도급업체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할 것
 2. 하도급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위탁 할 것

제3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② 구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구매자의 계약해제 등

대외비

- ① 구매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자가 과산, 영업정지 기타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공급자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공급자가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5조에 따라 구매자가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급자가 본 계약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해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구매자가 작업중단을 요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기타 공급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제1항 1호 및 7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공급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제33조 공급자의 계약해제 등

- ①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사업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구매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 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지체없이 기성 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구매자가 인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정된 인수금액이 이미 지급된 기성금액보다 많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대외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 결정된 인수금액이 이미 지급된 기성금액보다 적을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청한 날까지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나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6조 지식재산권

- ① 본 계약에 따라 새롭게 산출된 산출물(이하 “신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 신규 산출물을 이용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구매자는 위 신규 산출물을 활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 ② 본 사업 수행 이전부터 공급자 및 제3자 창작하여 보유하고 있던 솔루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서는 공급자 및 원소유자에게 그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며, 구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산출된 시스템 운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솔루션의 사용권을 갖는다. 공급자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한 공급자 소유 솔루션의 구체적 사용조건 등은 공급자의 솔루션 정책에 따르도록 한다.

제37조 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공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단, 구매자의 지시 또는 선택에 따른 시공방법일 경우, 공급자는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 기밀유지 의무

- ① 본 계약(본 계약의 존재 및 조건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이하 “공개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당사자(이하 “수령 당사자”)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목적이나 활동을 위하여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그러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공개 당사자의 정보에 대하여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현재 대중에게 공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추후 대중에게 공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
 2. 공개 당사자가 수령 당사자에게 최초로 공개한 날짜 이전에 수령당사자가 소유하였으며

대외비

그 소유를 적절히 소명할 수 있는 정보.

- ③ 수령 당사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관계인, 이사 또는 직원이 일반조건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보를 고려하고 보유하도록 보장한다.
- ④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별첨으로 첨부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한다.
- ⑤ 본 조는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이후에도 존속한다.
- ⑥ 당사자 일방이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른 일방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9조 법령의 준수

구매자와 공급자는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 분쟁의 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되, 상호간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재판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41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첨 2.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본 계약 특수조건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계약 특수조건의 지위

계약문서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1) 특수조건 (2) 자동화 설비 구축 계약서 (3) 일반조건 (4) 부록 순으로 한다.

제3조 최종사용자의 지위

- ① 본 계약 관련 구매자의 기타 확인, 공사감리, 자재검사, 설계도면 변경, 대금지급을 위한 구매자의 승인(단, 이에 한정하지 않음) 등 구매자의 권한 일체는 주식회사 컬리(법인등록번호 110111-5603504, 이하 “최종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후 행사되어야 한다. 명확히 하면, 최종사용자의 승인 없이 구매자는 기타 확인, 공사관리, 자재검사, 설계도면 변경, 대금지급을 위한 승인(단, 이에 한정하지 않음) 등 구매자의 권한 일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행사는 효력이 없다.
- ② 본 계약상 2차 중도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구매자는 본 계약상 구매자의 지위를 최종사용자에게 이전(그 당시까지 설치된 본 계약상 목적물에 대한 소유의 이전을 포함)하고, 최종사용자는 이를 이전 받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상호 합의를 통해 확정한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2023. 1. 31.까지 HW 구축을 완료하고, 이에 대하여 최종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④ 본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구매자의 공급자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본 계약상 구매자의 지위가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기 이전까지의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무는 구매자가 계속 부담한다. 단, 본 계약상 구매자의 지위가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기 이전까지, 최종사용자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는 최종사용자에게도 직접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사용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자는 최종사용자에게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상기 본 조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본 계약상 이행보증금, 이행보증서 등 일체의 채권 양도, 계약상 지위이전에 대한 일체의 승낙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상 지위 등 양도를 위하여 구매자와 최종사용자가 요청하는 사항(계약상 지위 이전 계약 체결,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 제공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이행하기로 한다.